



제 432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안도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6255호)

2026. 2.

재정경제기획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최병권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2
1.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 세 비과세 신설 (안도결의원안)	2

I. 개요

1. 안도결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2216255호)

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안도결의원 등 12인

(2) 제 안 일 : 2026. 1. 22.

(3) 회 부 일 : 2026. 1. 23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4호).

다.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안도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25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II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설 (안도결의원안)

현 행	개 정 안
☐ 비과세(제4조) 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- <신 설>	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☐ 신설되는 조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- <u>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조세특례 신설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</u> ☐ 시행일: 공포일 ☐ 적용례: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

* 안도결의원안 2026. 1. 22. 제출(의안번호 16255)

☐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안도결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16254호)이 입법화되는 것을 전제로, 동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려는 것임.

☐ 현행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5조에서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·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의 20%와 같은 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의 10%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하되¹⁾,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음²⁾.

1)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5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□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감면함으로써 국민의 투자를 유도하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등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취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□ 다만, 개정안은 ‘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과세특례’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, 안도걸의원이 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서 동 제도의 신설 여부에 따라 개정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문 의 처

02)6788-5157

호별	과세표준	세율
1	「조세특례제한법」·「관세법」·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·법인세·관세·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(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	100분의 20
2	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	100분의 10

2) 「**농어촌특별세법**」 제4조(비과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1. 국가(외국정부를 포함한다)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
2. 농어업인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)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·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·특별세액감면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의3제1항·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
- 3의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
- 3의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
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6조의3·제86조의4·제87조·제87조의2·제87조의5·제88조의2·제88조의4·제88조의5·제91조의14,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(이하 생략)

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이상

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
(정부보증채권 투자자 → 이자)

+

민간·국민자금 75조원
(금융회사·연기금 및 국민 → 투자이익)

[산은 출연(비용보전 목적)]

[정부재정 후순위 보장]

(‘26년 1조원 예산반영)

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

정책금융협의회(금융위 부위원장주재)

기금운용심의회(개별건 심의)

집중
지원

메가프로젝트 / 밸류체인 / 지역

투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방식

지분
투자

인프라
투융자

간접
투자

국민
참여

산업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“메가 프로젝트” 중심으로 지원

(대규모 자금 + 규제·재정·세제·지자체·인력 토탈솔루션)

* 예) GPU 10만장 이상의 AI데이터센터 및 관련 전력망 구축
글로벌 탑티어 바이오시밀러(신약 위탁생산) 종합제약사 육성

① 미래 20년 新성장동력이 될 “첨단전략산업” Target

- 첨단전략산업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10개 산업 90개 기술

*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차, 바이오, 인공지능, 방산, 로봇 +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(시행령 - 예: 콘텐츠·핵심광물 등)

② 첨단전략산업의 “밸류체인”을 구성하는 생태계 전반 포괄

- R&D, 중소·중견 및 장비·설비기업, 에너지 등 인프라, 해외진출 및 구매자 금융 등 첨단전략산업 전·후방을 포괄 지원

③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“지역성장 프로젝트”

- 5극3특 전략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, 지역 우대 정책과도 연계

* 예) 경남 방산 프로젝트, 호남 AI데이터센터, 경북 이차전지 프로젝트 등